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 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연구사업
2. 산학협력정부지원사업
3.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특허 및 지적재산권 취득·관리사업
4.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 지원사업
6.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7. 재정지원사업
8. “대학” 교외연구비 지급 및 관리
9. 부설연구소 평가 및 지원
10.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임원) 단장은 산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요직에 근무한 자 또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본 교단 목사, 장로로 유경험자로 하며, 임기는 따로 한다.

제5조 (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 인재개발원, 산학공동장비활동센터 및 사업단(팀) 등을 둘 수 있다.

② 팀에 팀장 1인, 센터에 센터장 1인, 원에 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위별 직원, 조교와 연구원을 두거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산업체와 협약에 의하여 공동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고, 산학협력단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센터 또는 사업단위별 운영지침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업무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7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7. 부속기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원창업에 관한 사항

제8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계

제9조 (회계처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 및 각 사업단별 집행지침에 따라 처리하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재정 운영 및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고, 자금 집행은 총무처에서 담당한다. 단, 교비 대응투자비는 대학에서 집행한다.

제10조 (예산 및 결산보고)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운영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3. 자금계산서
4. 부속서류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 대학의 장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로 시행한다.

부칙

2.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6일로 시행한다.